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2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송옥주 · 임미애 · 황명선
윤준병 · 안태준 · 박홍배
강준현 · 전종덕 · 염태영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신고·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지자체·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분석·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꿀벌 질병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꿀벌 질병”이란 꿀벌의 생존, 번식 또는 봉군 유지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감염성 질환, 기생충성 질환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꿀벌 질병의 종류, 진단기준, 의심사례의 판단기준 및 방역상 필요한 매개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꿀벌 질병의 예찰, 신고, 검사, 정보수집 및 확산방지에 관한 사항

13. 꿀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14. 꿀벌 질병의 검사 및 병성감정 체계 구축

15. 꿀벌 질병의 발생상황 분석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제3조의4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및 꿀벌 질병 매개체에 대한 임상·

환경 모니터링 검사와 그 밖에 꿀벌 질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꿀벌 질병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꿀벌 사육농가, 채밀장, 이동봉군 집적지역, 밀원지 주변 및 방제취약지에 대한 맞춤형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⑩ 꿀벌 질병과 관련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꿀벌 사육 또는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독설비, 출입통제, 방충·방제시설, 기록보존체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 질병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체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꿀벌의 소유자등은 봉군의 집단폐사, 월동봉군의 급격한 약화, 응애의 급증, 낭충봉아부패병 또는 그 밖의 꿀벌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방법, 기한 및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질병의 신속한 진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 검사 또는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민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검사범위, 품질관리, 보고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8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지체 없이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역학조사)”를 “(역학조사 및 예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봉군, 이동경로, 채밀장, 화분매개용 시설, 밀원지 및 그 밖에 꿀벌의 이동·접촉과 관련된 장소에 대하여 예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⑪ 꿀벌 질병의 예찰 대상, 조사방법, 시료채취, 환경조사 및 결과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꿀벌 질병 방역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봉군의 이동제한, 소독, 방제, 살충관리, 봉군 재배치 제한, 검사명령 및 그 밖의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절차, 기간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꿀벌 질병의 방역조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하거나 폐기한 봉군, 여왕벌, 벌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시설의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까지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⑦ (생략)

<신설>

-----.

1. ~ 11. (현행과 같음)

12. 꿀벌 질병의 예찰, 신고, 검사, 정보수집 및 확산방지에 관한 사항

13. 꿀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14. 꿀벌 질병의 검사 및 병성 감정 체계 구축

15. 꿀벌 질병의 발생상황 분석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및 꿀벌 질병 매개체에 대한 임상·환경 모니터링 검사와 그 밖에 꿀벌 질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

<신 설>

<신 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 ⑥ (생략)

<신 설>

<신 설>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꿀벌 질병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꿀벌 사육농가, 채밀장, 이동봉군 집적지역, 밀원지 주변 및 방제취약지에 대한 맞춤형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⑩ 꿀벌 질병과 관련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꿀벌 사육 또는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독설비, 출입통제, 방충·방제시설, 기록보존체계 등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 질병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체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꿀벌의 소유자등은 봉군의 집단폐사, 월동봉군의 급격한 약화, 응애의 급증, 낭충봉아부패병 또는 그 밖의 꿀벌 질병

<신 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방법, 기한 및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병성감정 및 조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질병의 신속한 진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 검사 또는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민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검사범위, 품질관리, 보고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8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지체 없이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13조(역학조사) ① ~ ⑨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제13조(역학조사 및 예찰)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봉군, 이동경로, 채밀장, 화분매개용 시설, 밀원지 및 그 밖에 꿀벌의 이동·접촉과 관련된 장소에 대하여 예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⑪ 꿀벌 질병의 예찰 대상, 조사방법, 시료채취, 환경조사 및 결과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꿀벌 질병 방역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봉군의 이동제한, 소독, 방제, 살충관리, 봉군 재배치 제한, 검사명령 및 그 밖의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절차, 기간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꿀벌 질병의 방역조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하거나 폐기한 봉군, 여왕벌, 벌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시설의 소유자

② ~ ⑦ (현행과 같음)